

순천대학교 양성평등위원회규정

제정 2007. 6. 26.

개정 2019. 3. 25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 양성평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(이하“양성평등조치계획”이라 한다)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
2. 학내 양성평등 교육연구환경 조성
3. 기타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위원회 구성) ①위원회는 교무처장, 교무부처장 및 학생상담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지명하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임명직 위원은 단과대학별 각1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남녀동수로 한다.(개정 2019. 3. 25.)

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제4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

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실무위원회) 위원회의 양성평등조치계획 수립 및 평가활동 등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제8조(의견청취 등)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9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.

제10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(2007. 6. 26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9. 3. 25.> (순천대학교 학칙)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의 별표 1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규정의 개정)

①부터 ③까지 생략

④ 순천대학교 양성평등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위원회 구성) 본문 중 “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장”을 “학생상담센터장”으로 한다.

⑤ 생략